



長錦商船株式會社  
Sinokor Merchant Marine Co., Ltd.



<http://www.sinokor.co.kr>

---

수 신 : 고객사 제위

발 신 : 장금상선 주식회사

제 목 : 항만시설보안료(TERMINAL SECURITY FEE)징수 안내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.

2. 『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』제 42 조에 따라 국내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선박 및 화물에 대해 항만시설 보안료가 아래와 같이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= 아 래 =

- ◎ 시행 일자 : 2019년 1월1일부터
- ◎ 적용 대상 : 국내항 수출입 화물(포항항 미정)
- ◎ 적용 요율 : 86원(20')/172원(40')

3. 감사합니다.